

arts change the world

2019년도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인권영향평가**

/ 2019. 12

2019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권영향평가

2019년 12월 인쇄
2019년 12월 발행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편 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빛가람동 352)
전화 061-900-2100, 2200
팩스 061-900-2362
홈페이지 www.arko.or.kr
이메일 arko@arko.or.kr

본 보고서는 무단전제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권영향평가

/ 2019. 12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귀하

‘2019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 평가자

- 1차(내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차(외부) : 한국표준협회

2. 평가기간 : 2019. 11. 1 ~ 2019. 12. 26

목 차

제1장 인권영향평가 의의	7
제2장 인권영향평가 실행 개요	10
제1절 주체 및 범위	11
제2절 실행 절차	12
제3절 방법과 내용	14
제3장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17
제1절 종합 평가결과	18
제2절 분야별 평가	21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21
2.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준수	24
3. 산업안전보장	27
4.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29
5.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31
6. 환경권 보장	32
7. 이용자 인권보호	34
제3절 권고사항	36
제4장 지원심의 제도 운영 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38
제1절 종합 평가결과	39
제2절 항목별 평가	41
1. 접근 전략	41
2. 지원심의 추진방향 설정	42
3. 지원심의 회의 추진	42
4. 결과발표	43
제3절 권고사항	45

제5장 문화누리 카드 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46
제1절 종합 평가결과	47
제2절 항목별 평가	49
1. 세부계획 및 지침 확정·교부	49
2. 사업운영	49
3. 결과보고	50
4. 사업결과 및 현장의견 정책 환류	51
제3절 권고사항	52
제6장 지표별 세부평가 결과	53

제1장

인권영향평가 의의

□ 인권경영 원리 -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UNGPs)’

- 국제연합의 “보호·존중·구제” 프레임워크 실행을 위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 국제인권규범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다루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Initiative)가 표방하는 기준과 절차가 갖는 의미를 분석·정리·체계화한 결과물

□ “보호·존중·구제” 프레임워크

- <인권보호 의무> 국가는 모든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법·행정·입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 경영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 지침서 등을 제공해야 하며, 모든 가능한 사법적·비사법적 방식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등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보호하고,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
- <인권존중 책임> 기업은 사업을 전개하는 지역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인권에 대한 상당한 주의 의무(due diligence, 이하 ‘인권실사’)를 이행해 인권침해 회피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함
- <구제책 제공 의무> 기업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를 위해, 국가나 기업은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야 하며, 구제절차에 대한 피해자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

□ 공공기관 인권경영 제도화 - UNGPs의 국내 이행을 위한 조치

-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에 있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제도화, 공적 투자기관(국민연금)을 통한 민간기업의 인권 경시 풍토 개선 움직임은 기업과 인권 이슈와 관련해

국가가 인권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가장 일반화된 접근방식의 하나임

- 한편 국가의 의무 이행과 무관하게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도 국가의 특수한 기능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국내법과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활동을 통해 국가의 인권존중과 보호·충족 의무 이행에 기여하고, 동시에 스스로의 인권존중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인권영향평가 - 위원회의 인권현안 파악과 개선과제 도출

- 인권영향평가는 위원회의 변화하는 내·외부 환경 속에서 기관운영 및 사업 분야가 특정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실제적·잠재적 인권영향을 파악하는 활동
- 인권영향평가는 위원회가 부정적 인권영향을 방지·완화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근거가 되는 인권경영의 핵심 요소이면서 절차
- 외부 인권전문가, 독립적인 평가자,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인권영향평가 절차에 참여시켜 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제고

□ 인권영향평가 수행 과정 - 위원회 구성원의 역량 강화

- 인권영향평가 수행 과정은 담당 부서는 물론 조직구성원들이 인권이슈와 관련된 각종 법령과 위원회 내부규정, 정책과 제도, 실천계획을 정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인권경영 필요성에 대한 조직 내 공감대 확산과 부서 간 협력 네트워크 및 정보 수집체계 강화에 기여

제2장

인권영향평가 실행 개요

제1절 : 주체 및 범위

제2절 : 실행 절차

제3절 : 방법과 내용

제1절 주제 및 범위

□ 평가 수행기간

- 2019년 11월 1일 ~ 12월 26일

□ 평가 주체

- (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외부) 한국표준협회

□ 평가 범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운영 전반
- 주요 사업 (지원심의 제도 운영사업, 문화누리 카드 사업)

제2절 실행 절차

□ 평가 대상 사업 선정 및 체크리스트 1차 개발(2019. 11. 1~15)

- 기관운영 인권영향 평가지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인권경영 표준 매뉴얼>에서 제시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위원회 경영환경에 맞게 개선해 1차 정리(전문기관)
- 평가대상 사업 선정기준 위원회에 제시(전문기관) → 대상 사업 선정(위원회) → 해당 사업 관련 정보 외부 전문기관에 제공(위원회)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1차 개발(전문기관)
- 대상 사업 프로세스별 이해관계자 식별 및 분류 → 이해관계자 인권영향 분석 →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

□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안) 수립(2019. 11. 15)

- 평가 목적과 배경
- 평가 수행기간
- 평가 주체
- 평가 범위와 내용
- 평가 수행절차(주요 고려사항 포함)
- 평가지표(안)

□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및 평가지표 확정(TF-전문기관, 2019. 11. 19~12. 3)

- 인권영향평가 TF 착수 미팅(11. 19)
 - 인권영향평가 개요 설명(전문기관)
 - 2019년 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안) 논의
 - 1차 개발한 인권영향평가 지표(기관운영, 주요사업) 개선 논의

- 착수미팅에서 제안된 개선안 반영 2차 지표 제시(전문기관) → 내부 검토 후 수정 의견 제시(위원회) → 검토의견 반영해 평가지표 확정(전문기관)

□ 체크리스트 교육 및 서면 평가(2019. 12. 9~13)

- 인권경영 추진과 연관성이 높은 부서장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교육, 인권영향평가 개요, 체크리스트 답변 방법과 기준, 내부분석 및 서식 작성 방법에 대한 사전 설명회 개최
- 평가 대상 사업 담당부서 및 기관운영 평가 분야별 담당부서에서 평가 동시 수행

□ 체크리스트 답변 결과에 대한 내부 진단 및 분석 (2019. 12. 9~13)

- 위원회는 체크리스트 답변 결과에 대한 내부 진단 및 분석 과정에서 인권경영 핵심 분야를 다루는 법률과 법령, 내부규정 및 지침, 내부 추진 현황을 정리
- 지표가 요구하는 바와 위원회 내부 이행시스템 사이에 존재하는 거버넌스 간극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 과제 도출

□ 외부 2차 진단 및 분석(2019. 12. 13~30)

-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원회 자체 분석결과와 관련 증빙자료(내부규정 및 지침, 기관 일반현황 등)를 전달하고 자문을 청취함
- 외부 전문기관은 위원회가 작성한 분석결과를 내부규정과 지침, 위원회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인권경영 관련 데이터와 비교·검증
- 내·외부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평가 및 개선과제를 담은 피드백을 제공함

제3절 방법과 내용

□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독립성과 신뢰성 확보

- 평가결과 도출된 개선과제의 경영시스템 반영 용이성과 위원회 인권경영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주도로 평가 준비 및 실행, 결과 분석을 진행하였음
- 인권경영 전담부서가 주도하고 평가분야 관련 부서장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위원회 구성원들의 인권경영 인식 제고를 병행하였음
- 한편 단계적(내부 → 외부) 평가 결과 검증 및 분석을 진행해, 자체평가가 갖는 절차의 효율성은 물론 외부 전문기관이 갖는 객관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하였으며,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였음

□ 체크리스트 구성 방향

- <기관운영>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에 적용을 권고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자가진단체크리스트(2014년)’에 덴마크 인권위원회(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DIHR)가 개발한 인권준수평가(Human Rights Compliance Assessment, HRCA) 속성 체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내용 일부를 반영해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함
- 위원회의 현행 인권경영 추진체계와 관련 부서의 비즈니스 관행, 내부규정 등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10대 핵심 분야와 관련된 인권영향을 다룰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기관운영 전반에서 고려해야할 일반적인 인권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인권위가 제시한 지표를 위원회 상황에 맞게 개선해 활용
- <주요사업> ‘지원심의 제도 운영’, ‘문화누리 카드 사업’비즈니스 관행과 위원회 인권정책 및 이행시스템의 통합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사업특성을 반영한 인권 이슈를 체크리스트에 반영하였음. 향후 평가 대상 사업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위원회의 인권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인권영향평가 지표구성

○ 기관운영 평가 지표

연번	분야	항목	지표수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정책혁신부)	인권존중 정책 선언	29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인권경영 성과	
		구제절차 마련	
2	고용상의 비차별 (인재성장부)	고용상 비차별	17
		고용상 남녀 비차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인재성장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16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노동조합 부제 시 대안적 조치	
4	강제노동의 금지 (인재성장부)	강제노동의 금지	11
		자회사, 협력기관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5	아동노동의 금지 (인재성장부)	연소자 고용 금지	14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6	산업안전 보장 (재무관리부)	작업장 안전	17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재무관리부) (공정심의회)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10
		모니터링 실시	
		보안담당직원에게 의한 인권침해 방지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정책혁신부)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10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9	환경권 보장 (재무관리부)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8
		환경정보의 공개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비상계획 수립	
10	이용자 인권 보호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14

연번	분야	항목	지표수
	〈극장운영부〉 〈미술관운영부〉 〈인력개발원〉 〈예술기록원〉	제품 결함 시 조치	
		이용자 사생활 보호	
합계	10	33	156

○ 지원심의 제도 운영사업 평가 지표

연번	항목	지표수
1	접근 전략	4
2	지원심의 추진방향 설정	7
3	지원심의 회의 추진	7
4	결과 발표	2
합계	4	20

○ 문화누리 카드 사업 평가 지표

연번	항목	지표수
1	시행계획 및 지침 확정·교부	3
2	사업운영	6
3	결과보고	2
4	사업 결과 및 현장의견 정책 환류	3
합계	4	14

제3장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1절 : 종합 평가결과

제2절 : 분야별 평가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준수
3. 산업안전보장
4.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5.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6. 환경권 보장
7. 이용자 인권보호

제3절 : 권고사항

제1절 종합 평가결과

- 위원회는 기관운영 관행 전반에서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 UNGPs>의 규범적 근거인 국제인권장전 및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권이슈를 다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
- 위원회가 직접 관여하거나 연루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팝업시어터 특정 작품 및 연출가 등에 대한 차별적 조치 등에 대한 반성 및 개선 과정에서 기관운영 전반에 인권을 고려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가고 있음
- 또한 기관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예방·완화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대체로 인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있어, 개선과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인권경영 체계구축,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준수 분야에서 부정적 인권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대체로 잘 갖추고 있으며, 부정적 인권영향이 다수 잠재된 분야로 알려져 있는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 반면, 위원회 사업 특성 상 환경권 및 산업안전 보장, 현지주민 인권보호 분야에 대한 상대적 관심 부족으로 부정적 인권영향이 다수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조치를 마련하고 성과 정보수집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이행시스템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종합 진단결과는 다음과 같음

No.	분 야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6	3	0	0	0
2	고용상의 비차별	15	0	0	1	1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4	0	0	0	2
4	강제 노동의 금지	10	0	0	0	1
5	아동노동의 금지	4	0	0	0	10
6	산업안전 보장	12	3	1	0	1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5	5	0	0	0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0	3	0	0	7
9	환경권 보장	9	2	2	0	5
10	이용자 인권 보호	14	0	0	0	0
합 계		109	16	3	1	27



- 인권영향평가 평가 점수: 분야별 점수의 평균값(예 2점 · 보완필요 1점 · 아니요/정보 없음 0점)
- ※ 분야별 점수: 항목별 해당하는 지표의 득점의 합을 100점 단위로 환산하여 평균한 값
- ※ 100점 단위 환산방법 = $\frac{\sum(\text{해당항목 지표점수})}{(2 \times \text{해당항목 지표수})} \times 100$
- ※ 해당 없음에 대한 분야 및 항목은 제외함

No.	분 야	점수	비고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95.2	
2	고용상의 비차별	87.5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00	
4	강제노동의 금지	100	
5	아동노동의 금지	100	
6	산업안전 보장	82.3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75.0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50.0	
9	환경권 보장	72.1	
10	이용자 인권 보호	100	
평 점		86.2	

제2절 분야별 평가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 인권존중 정책선언

- 위원회는 인권침해 회피노력을 위원회 경영활동 전반에 통합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인권경영선언문을 제정하고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하였으며, 월례조회, 누리집 게시를 통해 선언문에 대한 교육 및 소통을 진행하고 있음
- 인권경영선언문은 국제인권장전 및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이 다루는 인권이슈와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괄하고 있으며, 작성과정에서 외부 인권 전문가의 재검토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인권정책 실효성을 제고하였음
- 2019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인권현안을 도출하고 이를 인권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기적으로 선언문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임직원 및 자회사, 협력업체, 공급망, 에이전트 등을 대상으로 인권정책 소통 및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개발할 것을 제안함

□ 인권영향평가의 정기적 실시

- 위원회는 2019년 기관운영 및 지원심의 제도 운영 사업, 문화누리 카드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인권경영 개선 및 증진 과제를 도출하였음. 향후 전 사업 분야로 점진적 평가 범위 확대를 제안함
- 인권영향평가 절차 및 검증 과정에서 외부 전문기관 및 인권 전문가가 참여하고, 내·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해 평가결과에 대한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 주요사업 분야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팝업시어터 피해자, 예술극장 운영 개선 공청회 등 주요 예술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주요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 및 가맹점주들에 의한 인권침해를 점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지표를 구성하였음

□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 위원회의 인권경영규정은 위원회가 직접 유발하거나 기여한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다룰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근거가 되는 문서로, 인권경영 체제 구축, 정기적인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인권경영 전담부서 지정,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절차 마련 등 인권경영 핵심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인권준수를 감시하고 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희롱 폭력 고충상담, 레드휘슬, 공공분야 갑질 근절 등에 대한 고충 접수 채널을 모두 포괄하는 위원회 소통 상담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음
- 또한 자회사 또는 문예기금 보조사업자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도 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해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징계하거나 기금지원에서 배제하고 있음

□ 인권경영 성과

- 이해관계자들이 위원회의 인권침해 우려를 제기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는 접근이 용이하고 위원회의 대응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위원회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경영실적보고서, 연차보고서, 누리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에 인권정책 및 제도화 성과 등을 공개하고 있음
- 향후에는 위원회의 전 사업장·자회사 및 협력회사·공급망, 에이전트와의 인권정책 소통 채널과 운영성과,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세부 내역,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절차 운영 성과에 대한 세부 내역, 인권영향평가 결과 등을 포괄해 공개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함

□ 구제절차 마련

-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지침을 수립해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레드휘슬, 성희롱 고충 신고, 지원심의

옴부즈만 등 다양한 구제채널을 마련하고 기관 업무포털,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있음

- 조사 결과 실재하지 않더라도 잠재적 인권영향으로 판단되면 인권피해가 더 복잡해지고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발해 제공하는 등 방지·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윤리경영, 반부패 청렴,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방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보호 조치 등을 포괄하는 통합 아르고 소통 상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체크리스트 진단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존중정책 선언	4	2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5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5				
4	인권경영 성과	6	1			
5	구제절차 마련	6				
합 계		26	3			

□ 위원회 대응 현황 및 권고사항

위원회 대응현황	권고사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분야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p> <table border="1" style="display: none;"> <caption>분야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 점수</caption> <thead> <tr> <th>항목</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인권존중정책 선언</td> <td>80</td> </tr> <tr> <td>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td> <td>100</td> </tr> <tr> <td>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td> <td>100</td> </tr> <tr> <td>인권경영 성과</td> <td>85</td> </tr> <tr> <td>구제절차 마련</td> <td>100</td> </tr> </tbody> </table> </div>	항목	점수	인권존중정책 선언	80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100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00	인권경영 성과	85	구제절차 마련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정책에 대한 정기적 검토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활성화 ○ 인권영향평가 대상 사업 점진적 확대 ○ 인권 성과 정보 공개범위 확대
항목	점수												
인권존중정책 선언	80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100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00												
인권경영 성과	85												
구제절차 마련	100												

2.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준수

□ 고용상의 비차별

-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국내 법령을 준수하고 인권경영선언문, 인권경영규정은 차별금지 원칙을 표명하고 있음
- 또한 인사관리 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공정채용 운영지침 등에 차별금지 및 기회균등 원칙을 규정해 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 승진, 퇴직 등 직장생활 전 과정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고 있음
- 여성,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하고 차별적 처우가 발생할 시, 인사부서장에게 고충처리 요청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있음
- 더 나아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외국인 근로자의 종교적·문화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결사 및 단체교섭 자유의 보장

- 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서 헌법과 노동관계법,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교섭권 보장을 인권경영선언문, 인권경영규정,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실천하고 있음
-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금지하고, 기존 노동조건을 노사합의 없이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단체협약은 노사 대표자가 참석하는 교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과 사용자 주요 경영 사항을 노동조합에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강제노동, 아동노동 금지

-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과 국제인권규범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를 인권경영선언문, 인권경영규정에 명시하고 실천하고 있음
- 강제노동은 휴일근무, 시간외 근무, 당직근무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해소되

는 이슈가 아니라 퇴직, 이직, 근무 과정 등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강제 조치를 포괄하는 것으로, 영향력 범위 내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직장 내 갑질,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가 드러난 자회사 및 문예기금 보조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징계, 지원 배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더 나아가 지원 대상 단체는 물론 영향력 범위 안에 위치한 모든 사업장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 체크리스트 진단결과 / 위원회 대응현황 및 권고 사항

○ 고용상의 비차별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고용상 비차별	5				
2	고용상 남녀 비차별	6				
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3				
4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1			1	1
	합 계	15			1	1

위원회 대응현황	권고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분야2. 고용상의 비차별</p>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caption>분야2. 고용상의 비차별 현황</caption> <thead> <tr> <th>항목</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고용상 비차별</td> <td>5</td> </tr> <tr> <td>고용상 남녀 비차별</td> <td>6</td> </tr> <tr> <td>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td> <td>3</td> </tr> <tr> <td>외국인근로자 비차별</td> <td>1</td> </tr> </tbody> </table>	항목	점수	고용상 비차별	5	고용상 남녀 비차별	6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3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의 종교적·문화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마련
항목	점수										
고용상 비차별	5										
고용상 남녀 비차별	6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3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1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4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5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5				
4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2
합 계		14				2

위원회 대응현황	권고사항
<p>분야3. 결사 및 단체교섭 자유 보장</p> <p>0 20 40 60 80 100</p> <p>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p> <p>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p> <p>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p>	-

○ 강제노동의 금지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강제노동의 금지	8				
2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2				1
합 계		10				1

위원회 대응현황	권고사항
<p>분야4. 강제노동의 금지</p> <p>0 20 40 60 80 100</p> <p>강제노동의 금지</p> <p>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p>	<p>○ 문예기금 지원 단체는 물론 영향력 범위 내 위치한 모든 사업장에 대한 강제노동 모니터링 제도화</p>

○ 아동노동의 금지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연소자 고용 금지	4				2
2	연소자 고용을 알게된 경우의 조치					8
합 계		4				10

위원회 대응현황	권고사항
<p>분야5. 아동노동의 금지</p> <p>0 20 40 60 80 100</p> <p>연소자 고용 금지</p>	<p>○ 문예기금 지원 단체는 물론 영향력 범위 내 위치한 모든 사업장에 대한 아동노동 모니터링 제도화</p>

3. 산업안전보장

□ 작업장 안전

- 위원회는 관련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등 국내 법령을 준수하고 이를 구체화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복리후생 규정에 작업장 안전, 임산부 및 장애인에 대한 고려, 산업재해 피해자 구제 등의 이슈를 포함하고 있음
- 단체협약 제71조(노동자의 보호), 제71조의 2(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72조(근로환경 및 작업환경)에 따라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제72조(근로환경 및 작업환경)에 따라 연 1회 작업환경 측정과 임직원 건강검진 수검을 지원하고 있음

□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 위원회는 작업장에서의 임신여성 및 연소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서 임산부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20조(특성별 사업장 환경개선)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적합한 사업장 환경 조성을 규정하고 있음

- 더 나아가 임산부·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환경 증진을 위해 위원회 건물, 극장 등 다중 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을 모니터링하고 이동약자를 고려한 재난 안전 대응 매뉴얼 수립 및 실행을 제안

□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 위원회는 아코코·대학교 예술극장 무대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공연출연자 및 스태프를 대상으로 연간 안전교육을 시행 중에 있으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음
- 작업장, 공연장, 골프장 등의 유해물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원회의 산업재해 회피노력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지원

-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는 취업규칙 제21조(재해보상)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 체크리스트 진단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작업장 안전	5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1	3			
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4				1
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2		1		
합 계		12	3	1		1

□ 위원회 대응현황 및 권고사항

위원회 대응현황	권고사항										
<p>분야6. 산업안전 보장</p> <table border="1"> <caption>분야6. 산업안전 보장 현황</caption> <thead> <tr> <th>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작업장 안전</td> <td>100</td> </tr> <tr> <td>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td> <td>60</td> </tr> <tr> <td>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td> <td>100</td> </tr> <tr> <td>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td> <td>70</td> </tr> </tbody> </table>	구분	점수	작업장 안전	100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60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100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부·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환경 증진을 위해 위원회 건물, 극장 등 다중 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을 모니터링하고 이동약자를 고려한 재난 안전 대응 매뉴얼 수립 및 실행을 제안 ○ 작업장, 공연장, 골프장 등의 유해물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원회의 산업재해 회피노력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구분	점수										
작업장 안전	100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60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100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70										

4.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 위원회는 문예기금 보조사업자에게 성폭력 예방 서약서, 청렴서약서, 용역 계약에 정보보호 규정 준수 및 보안을 요구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문예기금 보조사업자 중 인권침해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더 나아가 문예기금 지원 절차 및 평가과정에서도 노동권 침해 등 인권 침해 이력이 있는 문화예술 단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 강구 필요
- 위원회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공급망의 인권실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함. 공급망의 인권문제를 다룰 때는 대상 공급업체에 대한 영향력 보유 정도가 기준이 되며, 인권영향의 심각성 정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한편 단순히 인권침해에 연관이 된 경우,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책임은 위원회에게 부과되지 않으나, 공급업체가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소정의 역할을 담당할 수는 있으며, 공급주체가 범죄에 연루된 경우 관할권 내 사법기구에 협력해야 함

□ 모니터링 실시

- 위원회는 자회사 및 문예기금 보조 사업자의 인권침해 사안이 접수되면 감사 및 조사를 통해 징계 또는 지원 배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계약 또는 조달관행 정착을 위해 계약업무규정에 계약 상대방의 인권성과 평가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규정을 반영할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더 나아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사회적 책임 장려)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해 위원회의 조달절차와 모니터링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 위원회는 정보보호규정 제12조(비밀정보 취급자에 대한 적격심사), 제13조(비밀유지 등 서약의 징벌)에 따라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또한 일반보안업무 지침 제11조(용역사업 수행단계 보안), 제12조(용역사업 종료 단계 보안) 규정에 따라 사업관리 담당자는 보안을 취급하는 용역사업자에 대해 이행 단계별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

□ 체크리스트 진단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안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4			
2	모니터링 실시	1	1			
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4				
	합 계	5	5			

□ 위원회 대응현황 및 권고사항

위원회 대응현황	권고사항								
<p>분야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p> <table border="1"> <caption>분야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대응현황</caption> <thead> <tr> <th>항목</th> <th>점수 (0-100)</th> </tr> </thead> <tbody> <tr> <td>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td> <td>50</td> </tr> <tr> <td>모니터링 실시</td> <td>75</td> </tr> <tr> <td>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td> <td>100</td> </tr> </tbody> </table>	항목	점수 (0-100)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50	모니터링 실시	75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예기금 지원 절차 및 평가과정에서도 노동권 침해 등 인권 침해 이력이 있는 문화예술 단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 강구 필요 ○ 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계약 또는 조달관행 정착을 위해 계약업무규정에 계약 상대방의 인권성과 평가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항목	점수 (0-100)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50								
모니터링 실시	75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100								

5.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 위원회는 사업특성 상 토지보상, 현지주민과의 협의와 승인, 이주대책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예방·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건물 신축 및 증축 과정에서는 토지수용 및 이주,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구체화한 내부 지침이 필요함
- 국제연합은 문명 세계와 교류가 활발하지 않는 선주민들의 경우, 법적인 권한이 없이 관행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UN 선주민 인권 선언'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의 사에 따른 사전 인지 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 FPIC)' 과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법적 요건은 물론 지역사회 승인을 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할 것을 제안함

□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 위원회의 주요 사업 분야가 지적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로,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별도 규정을 마련해 문예활동 및 기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 리스크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7
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3			
합 계			3			7

□ 위원회 대응현황 및 권고사항

위원회 대응현황	권고사항
<p>분야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p> <p>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구체화한 내부 지침 마련 ○ 지역주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성과 정보 관리

6. 환경권 보장

□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 위원회는 에너지 합리와 추진계획에 따라 환경보호 및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매년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음
- 구체적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문화누리 카드 사업의 경우 카드 재활용 정책을 통해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있음

○ 더 나아가 임직원 및 시설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환경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환경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환경정보의 공개

○ 위원회는 연차보고서에 환경경영 개요 및 성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환경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 위원회의 사업 특성 상 심각한 환경 훼손, 오염 등의 부정적 영향을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은 미흡
 ○ 사업 분야가 환경영향이 크지 않더라도 신축, 매입, 증축 시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관행을 정립해, 물 사용량 및 재사용율, 폐기물 배출량 및 재활용율,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비상계획 수립

○ 위원회는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비상사태 대응을 포함한 안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중에 있음

□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1	환경경영체계 수립 및 유지	4		1	
2	환경정보의 공개	2	1		
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1	1	3
4	비상계획 수립	3			2
합 계		9	2	2	5

□ 위원회 대응현황 및 권고사항

위원회 대응현황	권고사항										
<p>분야9. 환경권 보장</p> <table border="1"> <caption>환경권 보장 현황</caption> <thead> <tr> <th>항목</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환경경영체계 수립 및 유지</td> <td>80</td> </tr> <tr> <td>환경정보의 공개</td> <td>80</td> </tr> <tr> <td>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td> <td>20</td> </tr> <tr> <td>비상계획 수립</td> <td>100</td> </tr> </tbody> </table>	항목	점수	환경경영체계 수립 및 유지	80	환경정보의 공개	80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20	비상계획 수립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및 시설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환경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환경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 ○ 환경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다 활성화 하고, 건물 신축, 매입, 증축 시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관행을 정립해, 물 사용량 및 재사용율, 폐기물 배출량 및 재활용율,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을 유도
항목	점수										
환경경영체계 수립 및 유지	80										
환경정보의 공개	80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20										
비상계획 수립	100										

7. 이용자 인권보호

□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 위원회는 공연장 운영규정 제17조(화재 등의 안전관리)에 소방시설법과 공연법에 따라 화재나 위급상황 발생 시 관람자의 피난 통로 확보 등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실천하고 있음
- 문예기금 지원 공모 내용과 절차에 대한 준법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기관 누리집(영문 페이지를 포함)을 통해 서비스(공연, 전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프로그램 및 서비스 결합 시 조치

- 위원회는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원회 과실 및 이용자 피해에 대한 조치(절차와 보상 관련)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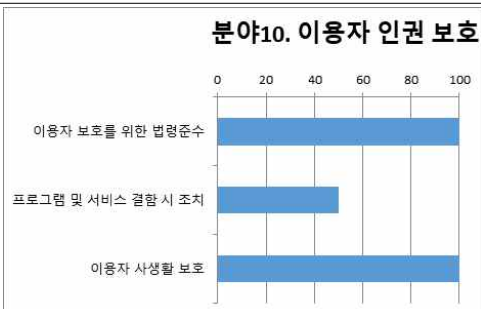
□ 이용자 사생활 보호

-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하고 정보 보안 담당자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원칙), 제12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13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제21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제37조(개인정보 침해대응 체계) 등에 따라 수집하는 개정정보를 관리, 목적 외 사용 금지,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해 대응하고 있음

□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6				
2	프로그램 및 서비스 결함 시 조치	2				
3	이용자 사생활 보호	6				
합 계		14				

□ 위원회 대응현황 및 권고사항

위원회 대응현황	권고사항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5px;">분야10. 이용자 인권 보호</div>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5px; width: 100%; font-size: small;"> <caption>위원회 대응현황 (분야10. 이용자 인권 보호)</caption> <thead> <tr> <th>항목</th> <th>대응현황 (%)</th> </tr> </thead> <tbody> <tr> <td>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td> <td>100</td> </tr> <tr> <td>프로그램 및 서비스 결함 시 조치</td> <td>50</td> </tr> <tr> <td>이용자 사생활 보호</td> <td>100</td> </tr> </tbody> </table>	항목	대응현황 (%)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100	프로그램 및 서비스 결함 시 조치	50	이용자 사생활 보호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원회 과실 및 이용자 피해에 대한 조치(절차와 보상 관련)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홍보
항목	대응현황 (%)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100								
프로그램 및 서비스 결함 시 조치	50								
이용자 사생활 보호	100								

제3절 권고사항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인권정책에 대한 정기적 검토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활성화
- 인권영향평가 대상 사업 점진적 확대
- 인권 성과 정보 공개범위 확대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준수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외국인 근로자의 종교적·문화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가 정착을 위한 조치 마련
- 문예기금 지원 기관 등 영향력 범위 내 위치한 사업장에 대한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모니터링 제도화

□ 산업안전 보장

- 임산부·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환경 증진을 위해 위원회 건물, 극장 등 다중 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을 모니터링하고 이동약자를 고려한 재난 안전 대응 매뉴얼 수립 및 실행을 제안
- 작업장, 공연장, 골프장 등의 유해물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원회의 산업재해 회피노력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문예기금 지원 절차 및 평가과정에서도 노동권 침해 등 인권 침해 이력이 있는 문화예술 단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 강구
- 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계약 또는 조달관행 정착을 위해 계약업무규정에 계약 상대방의 인권성과 평가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제도화

□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구체화한 내부 지침 마련
- 지역주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성과 정보 관리

□ 환경권 보장

- 임직원 및 시설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환경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환경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
- 환경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다 활성화 하고, 건물 신축, 매입, 증축 시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관행을 정립해, 물 사용량 및 재사용율, 폐기물 배출량 및 재활용율,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을 유도

□ 이용자 인권 보호

-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 및 피해에 대한 조치(절차와 보상 관련)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홍보

제4장

지원심의 제도 운영 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1절 : 종합 평가결과

제2절 : 항목별 평가

1. 접근전략
2. 지원심의 추진방향 설정
3. 지원심의 회의 추진
4. 결과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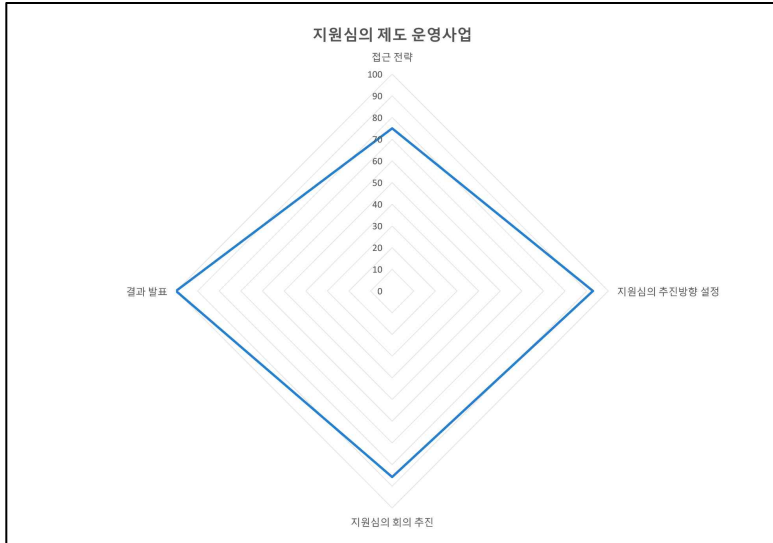
제3절 : 권고사항

제1절 종합 평가결과

- 위원회는 위원 및 심의위원 선정과 추진방향 설정, 심의회의 과정, 결과 발표 등 문예기금사업 지원 심의 전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제정·이행 중에 있음
- 문예기금 지원심의 제도가 전략적 측면에서 문화예술 단체 및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단체 및 종사자들의 인권성과, 인권침해에 대한 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요구됨
- 접근전략과 지원심의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보다는 심의회의 추진 및 결과보고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인권침해 문제가 아닌 인권증진 노력에 관한 사안으로 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지원심의 제도운영 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종합 진단결과는 다음과 같음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접근 전략	2	2	0	0	0
2	지원심의 추진방향 설정	6	1	0	0	0
3	지원심의 회의 추진	5	2	0	0	0
4	결과 발표	2	0	0	0	0
합 계		15	5	0	0	0

No.	분 야	점수	비고
1	접근 전략	75.0	
2	지원심의 추진방향 설정	92.9	
3	지원심의 회의 추진	85.7	
4	결과 발표	50	
평 점		75.9	




- 인권영향평가 평가 점수: 분야별 점수의 평균값(예 2점 · 보완필요 1점 · 아니요/정보 없음 0점)
- ※ 분야별 점수: 항목별 해당하는 지표의 득점의 합을 100점 단위로 환산하여 평균한 값
- ※ 100점 단위 환산방법 = $\Sigma(\text{해당항목 지표점수}) / (2 \times \text{해당항목 지표수}) * 100$
- ※ 해당 없음에 대한 분야 및 항목은 제외함

제2절 항목별 평가

1. 접근 전략

- 위원회는 공모, 심의 과정에서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배제하고 있으며, 결과보고 단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제출받아 열정 Pay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있음
- 또한 문예기금사업 보조사업자 중 인권침해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결정에서 배제하고 있음
- 더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 보급 표준계약서 활용실적 우수단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처리기준을 적극 활용하고, 문예기금 보조사업자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행을 제안함

□ 체크리스트 진단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접근 전략	2	2	0	0	0
위원회 대응현황		권고사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항목1. 접근전략</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보급 표준계약서 활용실적 우수단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처리기준을 적극 활용하고, 문예기금 보조사업자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행 				

2. 지원심의 추진방향 설정

- 위원회는 문예기금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해당 안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비상임 이사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참여 위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문예기금 사업 공정성을 강화하고, 심의위원 공개추천제, 심의위원 공정처리 규정, 외압신고제 등의 제도를 수립·시행 중에 있으며, 외부위원의 개인정보는 내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라 보호받고 있음
- 또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하고 이를 페이스북 생중계, 기관 누리집 게시를 통해 지원 사업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현장소통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음
- 더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가통계인 문화향유실태조사를 참고하는 등 예술 및 문화향유 실태를 고려해 추진방향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함

□ 체크리스트 진단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지원심의 추진방향 설정	6	1			

위원회 대응현황	권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가통계인 문화향유실태조사를 참고하는 등 예술 및 문화향유 실태를 고려해 추진방향의 실효성을 확보

3. 지원심의 회의 추진

- 위원회는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업무 공정처리규정을 제정·시행 중에 있으며, 물리적 거리 제약이 있는 심의 대상자들을 위해 영상 심의를 진행하고 있음

- 지원신청에서 포함된 사업기획안의 내용을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의위원들에게 공정심의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음
-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해 지원심의 불공정·불합리 관련 예술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이권 개입, 직위의 사적 이용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특혜의 배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 직무수행 지침을 위반한 심의위원에 대해 해촉 및 후보단 제외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더 나아가 심의절차에서 소외계층의 예술권 및 문화향유권 증진 기여도를 고려할 것을 제안함.
- 지원단계 또는 심의단계에서 평가대상 단체의 노동 관련법 위반 사례가 확인 될 시,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부여해 지원 대상 문화예술단체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증진에 기여할 것을 제안함

□ 체크리스트 진단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1	지원심의 회의 추진	5	2		


위원회 대응현황	권고사항
<p>항목3. 지원심의 회의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절차에서 소외계층의 예술권 및 문화향유권 증진 기여도를 고려 ○ 지원단계 또는 심의단계에서 평가대상 단체의 노동 관련법 위반 사례가 확인 될 시,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부여해 지원 대상 문화예술단체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증진

4. 결과발표

- 위원회는 지원심의 결과에 대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음

○ 심의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기준 준수, 총평 작성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체크리스트 진단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결과발표	2				
위원회 대응현황		권고사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항목4. 결과발표</p>  </div>		<p>○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채널 구축·운영</p>				

제3절 권고사항

□ 접근전략

- 문화체육관광부 보급 표준계약서 활용실적 우수단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처리기준을 적극 활용
- 문예기금 보조사업자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행

□ 지원심의 추진방향 설정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가통계인 문화향유실태조사를 참고하는 등 예술 및 문화향유 실태를 고려해 추진방향의 실효성을 확보

□ 지원심의 회의추진

- 심의절차에서 소외계층의 예술권 및 문화향유권 증진 기여도를 고려
- 지원단계 또는 심의단계에서 평가대상 단체의 노동 관련법 위반 사례가 확인될 시,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조치를 취해 지원 대상 문화예술단체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증진

□ 결과보고

-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채널 구축·운영

제5장

문화누리 카드 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1절 : 종합 평가결과

제2절 : 항목별 평가

1. 세부계획 및 지침 확정·교부
2. 사업운영
3. 결과보고
4. 사업결과 및 현장의견 정책 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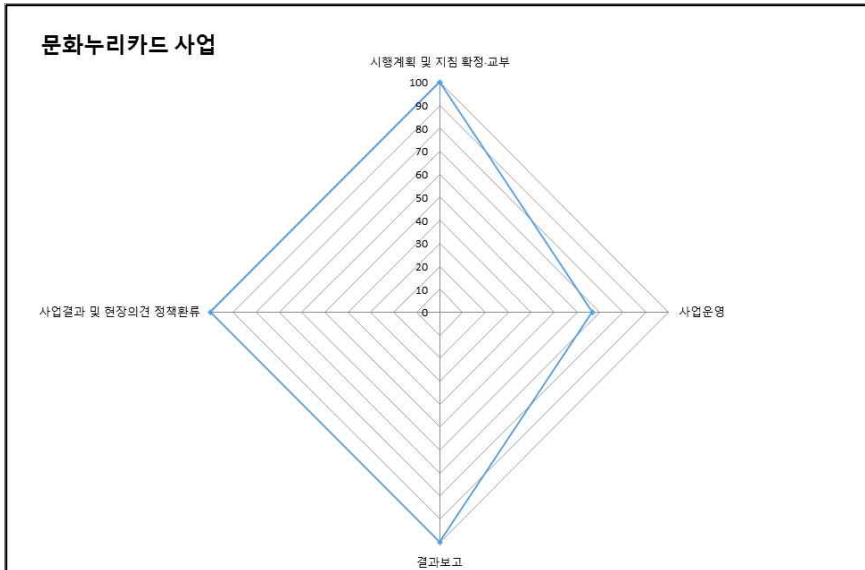
제3절 : 권고사항

제1절 종합 평가결과

- 위원회는 문화누리 카드 사업 계획 및 지침 확정 단계에서 지역사회 문화향유 실태, 전달체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 사업운영 단계에서는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률 및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별화된 홍보 전략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 관점에서 사업결과를 접근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의 정책 환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다만, 전달체계 종사자(읍·면·동 담당자, 가맹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지침을 제공하는 등 카드 이용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한 위원회의 노력이 요구됨
- 문화누리카드 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종합 진단결과는 다음과 같음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시행계획 및 지침 확정·교부	3	0	0	0	0
2	사업운영	4	0	2	0	0
3	결과보고	2	0	0	0	0
4	사업 결과 및 현장의견 정책 환류	3	0	0	0	0
합 계		12	0	2	0	0

No.	항 목	점수	비고
1	시행계획 및 지침 확정·교부	100	
2	사업운영	66.7	
3	결과보고	100	
4	사업 결과 및 현장의견 정책 환류	100	
평 점		91.7	




- 인권영향평가 평가 점수: 항목별 점수의 평균값(예 2점·보완필요 1점·아니요/정보 없음 0점)
- ※ 분야별 점수: 항목별 해당하는 지표의 득점의 합을 100점 단위로 환산하여 평균한 값
- ※ 100점 단위 환산방법 = $\sum(\text{해당항목 지표점수}) / (2 \times \text{해당항목 지표수}) * 100$
- ※ 해당 없음에 대한 분야 및 항목은 제외함

제2절 항목별 평가

1. 세부계획 및 지침 확정·교부

- 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가통계인 문화향유실태조사를 참고하고 있으며, 연 1회 정례적으로 17개 광역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분기별 결과보고서를 통해 개선의견을 접수하고 있음
- 수혜대상자들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협조로 누리카드 등록 누락자 명단을 제공받아 누락사유를 조사하고 정보접근성이 상대적이 취약한 노년 대상의 별도 홍보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체크리스트 진단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세부계획 및 지침 확정·교부	3				
위원회 대응현황		권고사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항목1. 시행계획 및 지침 확정·교부</p>  </div>		-				

2. 사업운영

- 위원회는 해당 사업 대상자들의 권리에 입각해 사업 정보 및 설명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찾아가는 카드 발급 서비스와 온라인 ARS충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문화누리카드 상설 콜센터를 운영 대상자들의 고충을 접수·처리하고 있음

- 사업 특성상 사업 수혜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향후 전달체계(기초단체 및 가맹점)를 대상으로 이를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지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제안

□ 체크리스트 진단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사업운영	4		2		
위원회 대응현황		권고사항				
		○ 전달체계(기초단체 및 가맹점)를 대상으로 수혜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 심화를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지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3. 결과보고

- 지방자치단체별 문화누리 카드 발급률, 집행률, 사용처 현황 등을 조사하여 소외 계층 문화향유 증진 성과를 관리하고 있음
- 부서 업적 보고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등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및 개선 성과를 포함하고 있음

□ 체크리스트 진단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결과보고	2				

위원회 대응현황	권고사항
<p>항목3. 결과보고</p>	-

4. 사업결과 및 현장의견 정책 환류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연간 30명 내외의 문화누리카드 발급 우수성과 자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음
- 홈페이지에 사전정보 게시 등 신속하게 정보 제공

□ 체크리스트 진단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사업결과 및 현장의견 정책 환류	3				

위원회 대응현황	권고사항
<p>항목4. 사업결과 및 현장의견 정책환류</p>	-

제3절 권고사항

□ 사업 운영

- 전달체계(기초단체 및 가맹점)를 대상으로 수혜지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 심화를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지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제6장

지표별 세부평가 결과

□ 기관운영 세부평가 결과

▶ 분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인권 존중 정책 선언	1 위원회는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					○ 17년 말 정책선언 완료 ○ 인권경영선언문
	2 인권정책선언은 위원회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					○ 인권경영선언문은 최고위 수준에서 승인함
	3 위원회의 인권정책선언은 위원회내 부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					○ 인권경영위원회에 결과보고 ○ 인권정책선언은 외부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 검토과정을 거침
	4 위원회의 인권정책선언은 위원회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주요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				○ 인권경영선언문에는 국제인권장전 및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관련 인권이슈를 포함하고 있음 ○ 2019인권영향평가결과 도출된 인권영향을 추후 검토 과정에 반영 예정
	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					○ 기관 누리집 링크 ○ 월례조회 결과 ○ 인권경영선언문을 전국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위원회 소통 채널과 교육 프로그램에 인권정책을 포함하는 등 확산 노력 필요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				○ 2019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2020년 5월경 개선 추진 예정
소 계		4	2				
인권	1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					○ 인권경영규정 제27조 1항에 연1회 이상 정기적 실시 규정 ○ 2019인권영향평가 실시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2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작성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및 외부 인권전문가와 공동으로 개발한 주요사업 평가 지표를 근거로 인권영향평가 실시
	3 인권영향평가가 실행 시 위원회 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 인권경영위원회 2019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예정 ○ 1차(위원회 자체 평가 → 2차(외부 전문기관 평가) ○ 계획, 지표개발, 수행, 결과 평가 전 과정에 외부 인권전문가 참여
	4 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공청회 추진 결과보고 ○ 팝업시어터 피해자, 예술극장 운영 개선 공청회 등 주요 예술계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결과를 평가 지표에 반영
	5 자회사나 협력기관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 지원심의제도를 통한 예술단체들의 인권 침해 여부, 문화누리카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함
	소 계	5					
인권경영 제도 화 별	1 위원회는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인권경영규정 마련 ○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지침 수립 ○ 사무처 운영규정 시행세칙 ○ 인권경영 전담조직 및 전담자 지정
	2 위원회는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를 지정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처 운영규정 시행세칙 별표 제2호에 따라 정책혁신부를 인권경영 추진 총괄부서로 지정하였음
	3 위원회는 인권준수 감시 장치를 마련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충상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레드휠슬, 공공분야 갑질 근절 등 각종 인권 이슈에 대한 신고 채널을 통합하여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위한 필요 조치	4 위원회는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르코 소통 상담 신고센터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인사관리규정 제52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그 유형), 제52조의3(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과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제52조의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 조항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으며, ○ 동 규정 제52조의5(인사고충처리)를 통해 직원 누구나 근로조건인사관리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인사고충상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과정개발, 사회적기억사업등 조치를 추진할 예정임 ○ 2019인권영향평가결과 도출된 부정적 인권영향 예방 및 완화조치 추진 예정
	5 자회사나 협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에서 갑질 등 인권침해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 감사부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사업자 중 인권침해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결정에서 배제
소 계		5					
인권 경 정 과	1 위원회는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영실적보고서 ○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2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영실적보고서 ○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3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영실적보고서 ○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 2018년부터 위원회연차보고서를 통해 인권경영성과를 전국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고 있음
	4	인권경영 성과 보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누리집 링크 ○ 위원회 연차보고서는 기관 누리집을 통해 전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음
	5	보고는 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실적보고서, 연차보고서 등 자료에 위원회의 연간 인권경영 성과를 모두 수록하고 있음
	6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차보고서 ○ 향후 인권경영관련 보고서 작성시 시계열적 정보를 기술하도록 개선
	7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검증) ○ 201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차보고서 ○ 2019인권영향평가 결과 외부 검증 진행
소 계		6	1				
구 제 절 차 마 련	1	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지침 ○ 고충상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레드취슬, 공공분야 갑질 근절 등 각종 인권 이슈에 대한 신고 채널을 통합하여 아르코 소통 상담 신고센터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음 ○ 팝업시어터 피해자 등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구제절차의 일환으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임
	2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지침 ○ 국가인권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규정을 제정하였음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3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누리집, 업무 포털에 공개 ○ 내부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절차(레드휠, 성 고충 신고 등), 예술가, 예술단체 인권침해 구제절차(지원심의 옴부즈만 등)를 마련하고 기관 업무포탈,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있음 ○ 인사규정에 수사이첩 및 사법기관 협력 명시 ○ 블랙리스트 피해자 구제 내용 중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추진 예정에 있음
	4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				
	5	피해자가 위원회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				
	6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소 계		6					
합 계		26	3				

▶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고 용 상 의 비 차 별	1	위원회는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 공정채용 운영지침 제3조제2항, 인권경영규정 제5조(고용상의 차별금지)를 통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2	위원회는 노동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				○ 공정채용 운영지침 제3조제5항에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음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3	위원회는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관리 규정, 취업규칙 제4조(평등처우)의 조항을 통해 위원회 직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단체협약 제34조(남녀고용평등 실천)에 의해 인사 및 근로 조건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업무 수행 능력 개발에 있어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4	위원회는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5	위원회는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소 계			5					
고 용 상 남 녀 비 차 별	1	위원회는 여성노동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채용 운영지침 제3조제5항에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음 ○ 단체협약 제34조(남녀고용평등 실천)에 의해 인사 및 근로 조건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업무 수행 능력 개발에 있어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취업규칙 제4조(평등처우) ○ 2번 지표 확인 필요(실적에 따른 차이인지, 남녀에 대한 차별인지) 아래 비정규직 항목에서의 동일 지표에 대한 내부 판단은 다름
	2	위원회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				
	3	위원회는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4	위원회는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					
	5	위원회는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6	위원회는 여성노동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					
소 계			5	1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1	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사업장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규칙 제4조(평등처우) ○ 계약직운영규정 제10조(차별시정고충처리)는 계약직 직원이 인사부서장에게 차별 시정 관련 고충처리를 요청하는 것을 보장
	2	위원회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위원회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3	위원회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					
소 계			3					
외국인근로자비	1	위원회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규칙 제4조(평등처우) ○ 2019년 외국인 채용사례가 1건 있으며, 타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 복리후생,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음
	2	위원회는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의 종교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배려를 명시하고 있는 내부규정 없음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차별	3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관((자회사, 지사 등)은 현지 문화와 제도를 존중한다.					○	
소 계			1			1	1	
합 계			15			1	1	

▶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1	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한다.	○					
	2	위원회는 노동조합 등을 통해 노동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 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 단체협약 제1조(교섭단체)에 의해 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위원회 내의 교섭단체임을 인정하고 있음
	3	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노동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					○ 단체협약 제4조(시설편의) 서울소재 시설 및 나주 본관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고 있음
	4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노동자의 대표와 단체교섭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					○ 분기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연례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소 계			4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노동조합 활동 특이 처우 면지	1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 단체협약 제11조의 2(조합활동 보장)을 통해 조합원의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음
	2 노동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3 노동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4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노동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5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					
소 계		5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	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					○ 단체협약 제75조(교섭의무)를 통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음
	2	위원회는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 단체협약 제8조(통보의무)를 통해 위원회는 주요 사항에 대해 조합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3	위원회는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노동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					○ 단체협약 제30조(해고 및 해고의 제한)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원을 해고하지 못하며,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본인 및 조합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4	위원회는 노동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위원회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	○					○ 단체협약 제75조(교섭위원)에 의해 단체교섭시 노사 대표자가 반드시 참석하게 하였음
	5	위원회는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 단체협약 전문에 의해 위원회는 협약을 상호 성실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소 계		5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1	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위원회는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노동 관련 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조치를 제공한다.					○	
	2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	
소 계							2	
합 계		14					2	

▶ 분야 4. 강제 노동의 금지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강제 노동 금지	1	위원회는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				
	2	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노동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3	위원회는 노동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				
	4	위원회는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				○ 인권경영규정 제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준수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준수
	5	위원회는 노동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				
	6	위원회는 노동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을 담보로 한 강제근로를 실시하지 않는다.	○				
	7	노동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				○ 취업규칙 제7조(사업 및 종업시간)에 의해 사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정하였음
	8	노동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통지 이후에 위원회를 그만둘 수 있다.	○				○ 인사관리규정 제38조(퇴직)의 규정에 근거하여 직원은 사직원을 제출할 수 있음
소 계		8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자 회 사 · 협 력 회 사 에 의 한 강 제 노 동 예 방	1					○	
	2	○					○ 골프장 감사를 실시하였음 ○ 자회사에서 갑질 등 인권침해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 감사부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사업자 중 인권침해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결정에서 배제
	3	○					
소 계	2				1		
합 계		10				1	

▶ 분야 5. 아동노동의 금지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연 소 자 고 용 금 지	1	위원회는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 인권경영규정 제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연령과 취직 인허증), 65조(사용 금지), 제66조(연소자 증명서) 등 준수
	2	위원회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15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3	위원회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4	위원회는 교육제품을 빙자하여 고용이 금지된 연소자를 고용하는 일이 없다.	○					○ 인권경영규정 제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연령과 취직 인허증), 65조(사용 금지), 제66조(연소자 증명서) 등 준수
	5	위원회는 서류를 통해 노동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	○					○ 채용시 신원확인서를 제출받고 있음
	6	출생증명서가 없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경우, 적절하게 나이를 확인하는 대안적 방법을 고려한다.						○
소 계			4				2	
연 소 자 고 용 을	1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기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한다.					○	○ 연소자 고용 사실 없음 ○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68조(임금의 청구), 제69조(근로시간),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 준수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알 게 된 경 우 의 조 치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4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다.					○		
	5	의무교육 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고용으로 인하여 의무교육이 중지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6	위원회는 아동들의 건강, 안전, 정신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규정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		
	7	위원회는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에 18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8	연소자들이 노동에 적합한 체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소 계								8
	합 계		4						12

▶ 분야 6. 산업안전 보장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작업장 안전	1	위원회는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하도록 유지한다.	○				○ 단체협약 제7조(노동자의 보호), 제7조의 2(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72조(근로환경 및 작업환경)에 의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2	위원회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					
	3	위원회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보관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					
	4	위원회는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5	위원회는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					○ 단체협약 제72조(근로환경 및 작업환경)에 1년에 1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 계			5					
임산부 및	1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			○ 단체협약 제39조의2(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제한) ○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준수 ○ 취업규칙 제20조(특성별사업장환경개선)은 직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조건 등 특성에 적합한 사업장 환경이	
	2	위원회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자를	○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장애인 등 보호		도덕상·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는다.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취업규칙 제23조(모성보호 등) ○ 취업규칙 제20조(특성별 사업장 환경개선)에 따라 직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적합한 사업장 환경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준수, 관련규정에 반영 필요
	3	임신을 한 노동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4	장애인들이 위원회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				
소 계			1	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1	위원회는 노동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2019년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무대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공연 출연자 및 스태프를 대상으로 연간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2	노동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노동자에게 제공되고,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				
	3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4	위원회는 노동자의 건강 상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은 법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다.				○		○ 산업안전보건 규정에 반영 필요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5	위원회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 단체협약 제72조 제3항에 의해 건강검진 수검을 지원하고 있음
소 계		4			1			
산업 재 해 피 해 근 로 자 지 원	1	위원회는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					○ 취업규칙 제21조(재해보상)에 의해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실시함
	2	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한다.				○		○ 복리후생 규정, 산업안전규정 등에 반영 필요
	3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한다.	○					○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소 계		2			1			
합 계		12	3		2			

▶ 분야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1	위원회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기관에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예기금 보조사업자들에게는 성폭력예방서약서 제출요청, 서면계약서 작성요청 등을 통해 인권보호 의무이행을 요청 ○ 계약체결 당사자와는 청렴서약서 체결 ○ 정보보호규정 제14조(용역사업보안등외부자보안관리) 용역계약시정보보호 규정 준수 및 보안요건을 계약에 포함 ○ 향후 계약프로세스에 인권보호 의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개선할 예정
	2	위원회는 협력기관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사업자 중 인권침해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결정에서 배제
	3	위원회는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예기금 보조사업자들에게는 성폭력예방서약서 제출요청, 서면계약서 작성요청 등을 통해 인권보호 의무이행을 요청 ○ 계약체결 당사자와는 청렴서약서 체결
	4	위원회는 협력기관과 계약 시 인권보호 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계약프로세스에 인권보호 의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개선할 예정
소 계			4				
모니터링	1	위원회는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기관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에서 갑질 등 인권침해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 감사부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 문예기금사업 보조사업자 중 인권침해 사항이 확인되는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실시	2	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 협력기관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	○					경우 지원결정에서 배제
	소 계		1	1				
보안 담당 직원 에	1	위원회는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 정보보호규정 제12조(비밀정보 취급자에 대한 적격심사), 제13조(비밀유지 등 서약의 집행) 등 조항에 의해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위원회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					○ 보안담당 직원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의한 인권 침해 방지	3	위원회가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	○					○ 정보보호규정 제14조(용역사업보안등외부자보안관리) 용역계약시정보보호 규정 준수 및 보안요건을 계약에 포함 ○ 보안담당 직원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4	위원회가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보호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 일반보안업무지침 제11조(용역사업 수행단계 보안), 제12조(용역사업 종료단계 보안)에 따라 사업관리담당자가 보안을 취급하는 용역사업자에 대해 수행단계, 종료단계에서 관리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있음
소 계			4					
합 계			5	5				

▶ 분야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보호	1	위원회는 토지 소유주를 비롯하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협의한다.					○	
	2	관련 법령에서 위원회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	
	3	위원회는 토지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지역주민의 법과 관습에 따른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	
	4	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	
	5	위원회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당사자나 제3자들과 협의를 한다.					○	
	6	위원회는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이익을 챙기지 않으며,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	
	7	법률에서 이주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법률 취지에 맞는 대책을 수립, 제공한다.					○	
소 계						7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지역 주민 의 지적 재산 권 보호	1	위원회는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				○ 수행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나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음
	2	위원회는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				
	3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				
소 계			3					
합 계			3			7		

▶ 분야 9. 환경권 보장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환경 경영 체 제 수	1	위원회는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					○ 에너지 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환경보호 및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매년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2	위원회는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					
	3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				○ 에너지 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에너지 절감 목표치를 정하고 실천하고 있음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립 및 유 지	4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 문화누리카드 재활용 정책을 통해 문화누리카드 발급에 따른 자원 소모를 절감하고 있음
	5	위원회는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노동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			○ 환경과 관련된 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음
소 계			4		1			
환 경 정 보 의 공 개	1	위원회는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노동자에게 제공한다.	○					○ 2018년 위원회 연차보고서를 통한 환경경영 정보를 공개
	2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경사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	○					
	3	환경정책을 개발할 때, 노동자, 고객, 공급자, 지역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과 협의한다.		○				○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정책 협의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미흡
소 계			2	1				
환 경 문 제 에 대	1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				○ 건물 신축, 매입, 증축 시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관행 정립 필요
	2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의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한 예 방 적 접 근 의 원 칙	3	환경영향평가 결과 심각한 환경영향의 가능성이 발견되면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4	환경훼손에 대한 과학적 입증은 없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
	5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를 대비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
소 계			1	1		3	
비상 계획 수립	1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
	2	위원회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비상사태 대응을 포함한 안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3	위원회는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현지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	○				
	4	위원회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 관련당국, 외부 비상사태 대응기관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5	위원회와 병원간의 거리가 먼 경우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					○	
	소 계	3				2	
	합 계	9	2	2		5	

▶ 분야 10. 고객인권 보호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	위원회는 제품 및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고객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 공연장 운영규정 제17조(화재 등의 안전관리)에 소방시설 법과 공연법에 따라 화재나 위급상황 발생 시 관람자의 피난 통로 확보 등 안전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2	위원회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표시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				○ 문화예술기금 지원 공모 등의 절차 준법 모니터링
	3	고객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 기관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공연, 전시)의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고 있음
	4	위원회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고객을 속이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				○ 문화예술기금 지원 공모 등의 절차 준법 모니터링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5	위원회는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특성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 기관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공연, 전시)의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고 있음
	6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					○ 기관 영문 누리집을 통해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소 계			6					
제품·서비스 결함 시 조치	1	위원회는 제품 및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알리고 해당 제품과 서비스를 즉시 중단한다.	○					○ 공연장 운영규정 제14조(대관 취소, 대관료 반환 등) 위원회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대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납부액의 100%를 반환
	2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고객이 손실을 당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	○					
소 계			2					
이용자 사생활 보호	1	위원회는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위원회가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하고 정보보안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2	고객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					○ 개인정보수집 시 기관누리집을 통해 공개함
	3	고객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사무처장)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재무관리부 담당자)를 지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4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					○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원칙), 제12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13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등을 통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고객들의 동의를 받고 있음
5	고객 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1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의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
6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7조(개인정보 침해대응 체계) 등 조항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소 계		6					
합 계		14					

□ 지원심의 제도 운영사업 세부평가 결과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접근 전략	1	위원회는 문예기금사업 전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유발하거나 연루되지 않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 심의과정에서 성폭력, 갑질 가해자를 배제 ○ 결과보고 단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열정 페이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있음
	2	위원회에는 인권침해를 유발하거나 연루되어 있는 문화예술 종사자(단체)를 문예기금사업 지원 또는 심의 과정에서 제외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정책 또는 제도가 있다.	○				
	3	위원회에는 인권 증진 성과가 있는 문화예술 종사자(단체)를 문예기금사업 지원 또는 심의 과정에서 우대하는 정책 또는 제도가 있다.	○				
	4	위원회는 문예기금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또는 종사자가 인권침해를 유발하거나 연루된 경우, 영향력 범위 안에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제도가 있다.	○				
소 계		2	2				
지원 심의 추진 방향 설정	1	위원들에게 문예기금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				○ 사업 추진 이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예기금사업 추진 계획을 의결함
	2	위원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유롭게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				○ 위원회 위원은 비상임 임원으로써 위원회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음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3	심의위원의 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절차를 규정한 내부 규정(지침)이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체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심의위원의 개인정보를 관리 심의전문가 신청 페이지에 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절차에 동의를 구하고 있음
	4	문화예술 종사자(단체)의 정보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및 광역권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원사업 내용과 심의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동 설명회를 페이스북 생중계하고 영상을 기관 누리집에 업로드하여 많은 예술가들이 쉽게 지원사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5	문화예술 종사자(단체) 선정과정에서 차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랙리스트사태 이후 지원심의의 공정성 강화 심의위원공개추천제, 심의위원공정처리규정, 외압신고제 등의 제도를 구축하여 심의 공정성 제고
	6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문화예술 향유 실태를 고려한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체부 주관 국가통계인 문화향유실태조사 참고하는 경우가 있음
	7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화예술 종사자(단체)의 의견을 경청하는 채널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소통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소 계		6	1				
지원 심의 회의 추진	1	심의절차는 사업에 지원한 문화예술 종사자(단체)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랙리스트 사태이후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업무공정처리규정을 제정·시행 중
	2	물리적 환경이나 의사소통 문제로 심의절차 참여에 제약이 있는 경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교류사업 중 청년예술가 해외진출사업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거나 지방에 있어 인터뷰심(PT)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Skype로 심의를 진행 수어통역 등 의사소통 조력에 관한 조치가 요구됨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3	지원 대상 문화예술 종사자(단체)의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를 취한다.	○					○ 지원심의회에 참여하는 심의위원들이 지원신청서에 포함된 사업기획안의 내용을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 심의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음
	4	심의 절차에 참여하는 문화예술 종사자(단체)가 절차와 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시,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 지원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절차가 있을 경우 예술단체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5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해치는 발언 금지 등 사전 지침을 전달하고 위반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 심의위원 직무수행 지침 제4조(이해관계직무관여금지), 제5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6조(직위의 사적 이용금지), 제7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8조(특혜의 배제) ○ 동 지침 제12조(수행의무 위반 시 제재)에 따라 지침위반 시 심의위원 해촉 및 후보단 제외 조치
	6	심의절차에서 지원 대상 문화예술 단체 종사자의 노동환경을 고려한다.	○					○ 문화예술계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 또는 서면 계약서 체결 확대는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 계약행위를 한 주체'에 해당하는 단체는 신청에서 배제
	7	사업 선정과정에서 소외계층의 예술권 및 문화 향유권 증진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고려한다.	○					○ 2020년도 심의부터 지방의 예술권 및 향유권 증진을 위해 지역선정비율 최소 보장제를 도입하였음
소 계		5	2					
결과 발표	1	선정 결과 및 지원 규모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시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					○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음 ○ 심의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기준 준수, 총평 작성 강화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2	심의결과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형식으로 투명하게 공개한다.	○					○ 심의결과를 기관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개하고 있음
소 계		2					
합 계		15	5	0			

□ 문화누리 카드 사업 세부평가 결과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세부 계획 및 지침 확정 교부	1 위원회의 사업시행 세부계획 및 지침 확정 과정에서 지역별 소수자 집단, 사회적 약자(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실태를 고려하는 절차가 있다.	○					○ 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시 문체부 주관 국가통계인 문화향유실태조사를 참고하고 있음
	2 위원회의 사업시행 세부계획 및 지침 수립 절차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의무화 하거나 권장하는 지침이 있다.	○					○ 연회 정례적으로 17개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의견을 수렴 ○ 분기별 결과보고서 접수 시 서면으로 개선의견을 접수하고 있음
	3 위원회의 사업시행 세부계획 및 지침 확정하는 과정에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 정도를 고려하는 절차가 있다.	○					○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누리카드 등록누락자 명단을 제공받아 각 주민센터에 해당 명단을 통보하여 누락사유를 조사 ○ 정보접근성이 비교적 부족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홍보전략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소 계		3					
사업 영향	1 사업담당자는 해당 사업이 시혜가 아닌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증진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행의 일환이란 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					○ 사업의 취지가 포함된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자체담당자 대상 배포 ○ 6개 권역별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대해 정보를 제공
	2 카드발급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시선을 조장하지 않도록 읍·면·동 담당자에게 교육 및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대부분 소외계층 복지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침은 제공하지 않고 있음
	3 카드이용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시선을 조장하지 않			○			○ 지자체 담당자용 가맹점 등록 및 관리 매뉴얼은 있으나 가맹점 대상 교육 및 지침은 없음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도록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교육 및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필요시 2020년도에 가맹점 대상 매뉴얼 또는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예정
	4 사업내용에 대한 대상자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누리카드 등록누락자 명단을 제공받아 각 주민센터에 해당 명단을 통보하여 누락사유를 조사 ○ 정보접근성이 비교적 부족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홍보전략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5 이동약자나 노출을 꺼리는 대상자를 위한 방문서비스 또는 온라인 충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					○ 찾아가는 발급 서비스와 온라인 ARS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6 위원회는 사업 대상자의 고충을 접수하는 채널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다.	○					○ 국민신문고 등 기관민원 접수채널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 ○ 문화누리카드 콜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사업대상자의 고충을 접수받아 해결
소 계		4		2			
결과 보고	1 결과보고는 소수자 집단, 사회적 약자의 공동체 문화생활 참여 및 향유 등 인권 증진 성과를 포함하고 있다.	○					○ 지자체별 발급률, 집행률, 사용처 현황 등을 조사하여 소외계층 문화향유 증진 성과를 관리하고 있음
	2 결과보고는 문화누리카드 수혜자 및 전달체계 종사자들의 의견 청취를 포함하고 있다.	○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부서 업적보고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결과와 개선 내용을 보고하고 있음
소 계		2					
사업 결과 및 현장	1 문화누리카드 수혜자 및 전달체계 종사자들의 의견청취 결과를 사업 정책 및 이행절차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부서 업적보고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결과와 개선 내용을 보고하고 있음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의견 정책 환류	2	의견청취 내용과 개선조치 반영 결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다.	○				○ 정기모니터링과 분기별 의견수렴 반영 결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고 있음
	3	사업결과의 인권성과를 담당자 보상과 인센티브에 반영하고 있다.	○				○ 연간 30명 내외의 지자체별 문화누리카드 발급 우수 성과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여함
	4						
	소 계		3				
합 계		12		2			